

참고 마스크 발송 예외허용 기준 관련 Q&A(ver.4)

Q1. 우편물로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가 왜 수출금지 대상인가요?

- 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5조(수출금지) 개정('20. 3. 6.) 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2020. 3. 6.부터 수출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.
 - 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관련
- “법령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” 은 「관세법」 제 258조(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) 제2항에 따라 정식 수출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우편물로 발송 하실 수 없습니다.
 -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금지 대상물품에 해당되므로 수출금지 예외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.

Q2.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허용 규정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출금지 예외조항으로 인도적 목적을 위한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금지 예외가 적용되나,
- 개인의 경우 수출금지 예외 사전승인 등 수출절차 이행이 사실상 곤란하고, 정식 수출신고서 사전준비(개인통관고유부호, 신고인부호 발급) 및 수출신고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어
 -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, 국제우편물 접수시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 관계 등 우체국에서 간편확인 절차를 거쳐 국제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.

Q3. 모든 마스크가 수출금지 된 것인가요?

-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“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” 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(면마스크 등)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정한 수출금지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Q4. 마스크 예외허용 기준 수량이 월 8장까지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공적판매처 구매가능수량(주 2매) 기준을 준용하여 예외허용 가능 최대 수량이 月 8장(수취인 중복불가)으로 제한된 것입니다.
- 마스크 예외허용 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,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에는 합산 적용됩니다.
 - 예) 부모가 각각 8매씩 1명의 자녀에게 발송하는 경우 :
 - ☞ 동일 수취인 총 16매 수량으로 기준 초과

Q5. 가족의 인정범위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

-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및 발송인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를 가족으로 인정하며(4. 9. 개선)
- (증빙서류) 발송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과 수취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 제시 필요

Q6. 조부모(또는 외조부모)가 손자(손녀)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?

- 네. 발송가능합니다.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가족으로 인정됩니다.

- 발송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과 수취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 제시 필요

Q7. 직계존비속, 배우자에게는 보낼수 있는데 사위, 며느리에게도 보낼 수 있는가요?

- 네. '20. 4. 9.(목)부터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도 가족으로 인정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.

Q8. 외국인은 이번 수출금지 예외허용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?

- 재외국민의 안전과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, 내국인이 해외거주 가족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소량의 마스크에 대해 예외 적용된 것으로서,
 - 대한민국 국민인 아닌 외국인은 이번 수출금지 예외 허용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Q9. 국적상실 발송인이 한국 국적 가족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?

- 재외국민의 안전과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, 내국인이 해외거주 가족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소량의 마스크에 대해 예외 적용된 것으로서,
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적 상실자, 외국인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이번 수출금지 예외 허용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 - 발송인, 수취인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.

Q10.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상자에 담아 발송할 수 없는 것인가요?

- 예외적용기준 마스크 수량을 건별로 확인(포장된 박스의 중량, 수량 검증 등) 곤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부득이 단일 품목으로만 포장을 제한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11. 예외허용 마스크(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) 이외 동봉 불가품목에 면마스크도 포함되나요?

- 네. 예외허용 마스크(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) 이외 면마스크를 포함한 다른 물품은 어떠한 품목도 함께 발송이 불가합니다.
 - 예외적용기준 마스크 수량을 건별로 확인(포장된 박스의 중량, 수량 검증 등) 곤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부득이 단일 품목으로만 포장을 제한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12. 면마스크나 필터교체형 마스크도 한상자에 별도 포장해서 보내야 하나요?

- 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를 제외한 물품은 규제하지 않습니다.

Q13. 예외허용 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해외로 발송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집수우체국으로 반송조치 될 수 있으며, 우편물 반송시 우편요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.
-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14. 해외거주 수취인(가족)이 동일주소지의 같은 집에 여러명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한상자에 함께 발송할 수 있나요?

- 원칙적으로 함께 발송할 수 없으나, 인터넷 스마트(사전)접수 시 각 수취인별 마스크 수량을 모두 신고하고 수취인 기준 수량(월 8매)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함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.
- 우편물 접수정보 입력시 수취인명은 가족 중 대표 수취인(1명)으로 기재하고, 내용품명에는 수취인별 마스크 내역 각각 기재
- 예) 해외거주 자녀 3명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
 - ☞ 수취인명은 자녀 중 대표 1명(홍일동)으로 기재, 내용품명은 ‘Family Mask(홍일동) 8’, ‘Family Mask(홍이동) 8’, ‘Family Mask(홍삼동) 8’ 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마스크 24매를 한 상자에 포장해서 발송
- 동일 주소지로 여러 명의 마스크 발송 시 총 수량만 기재하고 내용품명에 수취인별 별도 내역이 미기재된 경우, 예외허용 기준 미충족으로 우편물이 반송 될 수 있습니다
-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, 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또, 추후 해외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Q15.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우체국에 보관해야 하나요?

- 아니오 접수시 가족관계 여부 확인만 하고, 별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.

Q16. 발송인을 대신하여 대리접수 가능하나요?

- 네. 발송인의 가족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하며, 발송인과 대리접수자 간의 가족관계서류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.
- 예)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이 조카에게 접수하는 경우
 - ☞ 할아버지와 손자(조카)와의 가족관계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할아버지와 삼촌간의 가족관계확인서류, 삼촌의 신분증(주민등록번호 확인)을 제시하고, 우편물 접수 정보는 발송인 할아버지, 수취인은 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.

Q17. 예외허용 마스크는 우체국에서만 발송가능하나요?

- 네. 우체국 스마트접수를 통한 국제우편물(EMS)로만 발송이 가능합니다.

Q18. EMS프리미엄으로는 발송할 수 없나요?

- 네. EMS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허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, 면마스크를 포함한 마스크(필터 포함) 류에 대해서는 수량에 상관없이 발송이 불가합니다.

Q19. 마스크 재발송 가능 시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- 최초 우편물 발송(접수일자)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재발송 가능합니다.



- 다음 발송가능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첫 영업일에 접수 가능